

제16장 입소자

제125조(입소대상)

- ① 보건복지부지침 및 노인장기요양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요양은 1, 2등급 또는 3, 4, 5등급 중 시설급여 노인과 등급외자 노인이 입소 할 수 있다.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

- ① 제123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
 2.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
 3.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127조(입소정원)

-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128조(운영일시)

- ① 본 시설은 365일 운영하며 면회·외출·외박·입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면회는 일일 09:00에서 20:00까지 실시한다.
 2. 외출은 보호자와의 동반 하에 가능하며 외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외박은 3일전 시설장의 재가 후 가능하며 최장 7일까지 가능하다.
 4. 입원은 1회 10일까지 가능하며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퇴소를 요청한다.
- ②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향의 1호에서 3호까지 금지할 수 있다.

제129조(모집방법)

- ①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희망자 및 입소 희망자의 보호자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타 복지시설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제130조(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 ① 입소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시설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면담, 관련제출 서류)를 통하여 입소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간호(조무)사는 상담 및 입소 시 신청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3. 제124조 입소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 1, 2등급과 3, 4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하고 입소대기 신청일자로 입소 순서를 결정하고 계약구비 서류를 필한 입소 대상자의 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131조(입소계약)

- ①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 대상자 또는 입소 대상자의 보호자와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별표 1)

제132조(입소계약 구비서류)

- ① 입소자와 계약자(보호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진단서(질환표시) 1부
 - 건강진단서(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1부
 - 처방전 1부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2. 계약자(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33조(입소 시 준비물)

- ① 개인의류(속옷, 겹옷, 양말, 신발 등), 개인위생 용품(틀니함, 로션 등)은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목적)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입소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을 작성한다.

③ (계약해지)입소 후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오거나 입소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135조 (시설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 자유의 권리
 -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보장받으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하며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36조(입소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월 이용료)은 노인장기요양고시 내용에 의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월 이용료를 매월 납입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면 대상자(저소득층) : 12% 또는 8%
- 일반 대상자 : 20%

2. 1일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 물가변동과 시설의 운영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 급식비(간식비 포함) : 3,000원/1식
- 프로그램 진행 비 및 기타 시설 이용비 : 무료

3. 다음의 각 사항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외출 또는 병원진료를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비용
- 기호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서비스 비용

4.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선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년 말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 확인서를 발행한다.

5. 이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료는 일할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 있다.

-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출, 외박 등에 대해 시설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6. 시설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은 물가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급여는 공단급여 판정평가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 ②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13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보호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다.
 1. 치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삽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위관 삽입은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 흡인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5.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별도의 실에 입소자를 분리 조치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9. 기타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0조(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입소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

제141조(건강관리)

- ①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고 진료협약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는 입소자는 필요한 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응급환자 조치 절차)

- ① 시설 입소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1.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입소자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2.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입소자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제143조(치료)

- ① 입소자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시설이 촉탁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물치료 외 요양,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책임하에 시설의 협약병원이나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지정한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입소자의 입소생활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법정 전염병이 발견(발병)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전염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입소자 또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의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④ 위 제 3항의 질병의 발생이 입소 이후 시설의 과실에 의해 발병한 것인 경우에는 시설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입소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입소자가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치료를 위하여 상당 기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입소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 다시 입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우선 순위로 입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병원비 및 간병비)

- ① 입소자가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해당 입소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 부담으로 하되 시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가 입소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고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5조(급여서비스운영 원칙)

- ①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월별로 급여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4.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급여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 5. 시설장 및 실무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운영간담회 등을 통해 입소자와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6조(시설의 면책범위)

- ① 시설내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질병에 의한 사고
2.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입소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사고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4.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
5. 입소 당시 및 입소기간 동안의 입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제147조(시설의 배상책임)

- ①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배상책임에 있어 시설의 면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보상보험금 지급함),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입소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의 대하여는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고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148조 (시설물 사용)

- ①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용물과 더불어 휴게실(거실), 물리(작업·운동)치료실, 기타 공동 서비스 시설에 대해 입소자는 다른 이용자와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한 침실에서 기거하고 상황에 따라 시설이 지정한 침실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 ② 입소자는 침실을 주거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③ 입소자는 침실 이외의 공용부분을 시설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입소자는 침실 또는 구내에서 시설이 제한하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 ④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에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거나 시설이 대신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⑤ 시설장은 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 ⑥ 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